「전자상거래법」 제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신각철
전 법제처 법제연구관

1. 전자거래와 데이터베이스

정보화가 진전될 수록 홈쇼핑, 홈뱅킹을 비롯한 전자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정부 공문서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전산망법, 사무관리 규정을 개정하였고, 현재 시행단계에 들어갔다.

현행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전자문서거래에 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만이 채택되고 있다.

대표적인 입법례로 '무역업무자동화에 관한 법률'이 최초의 입법이고, 그 뒤로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공업 및 에너지 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위의 입법에서도 전자문서(EDI)의 도달시기, 문서내용의 효력, 시스템의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었을 뿐이다.

'전자상거래'(EC)는 전자문서(EDI)와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전자상거래는 전자문서교환(EDI), 전자자금거래(EFT), 전자우편(E-mail), 데이터베이스(Database) 등이 종합적으로 기능하여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는 전자문서교환방식(EDI)과 달리 일반 상거래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①의사표시(주문, 선택), ②상품운송(송달), ③대금결재(송금) 등이 전자정보에 의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적근거가 명백하게 마련되어야 거래담당자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분야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겠다. 전자문서, 전자우편, 전자자금거래 모두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품유통 데이터베이스에서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의 모양을 영상화하고, 품질의 표시, 가격정보, 기타 제조원의 표시 등 상세하게 정보가 축적되어야 이용자가 선택·주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품대금 결재를 위한 전자자금 거래의 경우도 은행을 비롯한 금융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보안조치가 강화되어 홈뱅킹서비스(HomeBanking)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는 관련 정보의 처리·전송·보관 등 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안전성,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소프웨어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산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그 실현이 가능하다.

2. 전자상거래의 특징과 문제점

전자상거래의 특징은 종래의 문서에 의한 상거래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서로 차이점이 있다.

첫째, 상거래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컴퓨터시스템이라는 「기계 대 기계」의 관계에서 거래가 형성된다. 따라서 컴퓨터 등 기계의 고장이나 불법행위 기타 장애 등 정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계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관련 당사자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관하여 법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상거래 당사자간에 본인이 진실된 거래자임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종래의 거래에서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자필서명 그밖에 신분증

등 본인이 진실됨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ID번호 또는 전자서명 등의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ID번호가 누출되거나 전자서명이 위조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문제가 있다.

셋째, 상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선택이나 주문 등이 신속하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속성은 있으나, 주문자가 주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경우 극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대다수의 거래자인 소비자의 보호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정보화 시대에 더욱 위축되고 있는 소비자보호 문제가 심각해진다.

넷째, 전자상거래는 종래의 개별적인 거래 형태와는 크게 다르다. 그 거래형태가 기계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크게 제한하게 된다. 또한 대량처리로 인하여 개별적인 특별한 사정을 거래상대방에게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즉 소형화·소량화·전문화를 요하는 종래의 주문생산·거래 등은 크게 위축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상품의 하자, 효용가치에 관하여 실제로 소비자가 접촉하여 확인할 수 없다.

다섯째, 종래의 거래는 수작업 문서에 의하여 거래형태, 처리과정 등 일련의 절차가 유형적이고 식별이 가능하다. 전자상거래는 시스템의 불가시성으로 인하여 정보사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과 과실의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등을 묻는데 곤란한 경우가 허다하다.

여섯째, 전자상거래의 경우는 거래당사자가 거래내용을 유형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확인할 수가 없다. 거래의 증거는 전자적 매체 예컨대, 전자문서·전자서명 등 비가시적 형태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적 기록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고 안정성·신뢰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거래자가 영세한 소비자로서 소비자보호를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문제이다. 시스템의 장애, 불법접근, 침해 등 정보사고 방지대책은 전자상거래제도 정착의 핵심적 과제이다. 문제는 완벽한 시스템보안을 취할 수 없다는데 있다. 해커 등 범죄기술은 계속 앞서가고 있고, 인터넷에 의한 국경없는 국제적 범죄의 처벌은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3. 입법과정에 반영해야할 기본적 과제

가. 소비자보호의 명확화

전자자금거래, 전자상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대부분의 거래들은 제공자 즉 사업자측의 경제적 편의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들이다. 엄격히 따진다면, 은행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금융전산화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용자(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편익을 위해서 도입되는 것이지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물론 소비자도 편리하겠지만 궁극적인 도입취지는 사업자의 편익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시스템장애, 불법접근·침해 등 정보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들은 대부분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예컨대, 이용자인 소비자가 단말기 조작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ID번호 등을 누출했기 때문에 즉 피해자의 과실로 정보사고가 발생한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컴퓨터전문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그 입증이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미국의 「전자자금거래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1978) 제 1693g조(소비자 책임)의 제2항에서 「허가받지 못한 전자식 자금거래에 대한 소비자 책임과

관련되는 소송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금융기관이 진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 제1693h조(금융기관의 책임)의 제3항에서 소비자가 「고의적이 아니고 선의의 착오로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은 증명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인 금융기관에게 장애등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과 아울러 소비자의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 그 손해 배상도 금융기관이 진다고 명문화하였다. 또한 1996년 6월 유엔상거래법위원회에서 제시한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Commerce)에서도 명백하게 이용자 보호조항이 들어있다. 동 모델법 제12조에서 전자 메시지의 효력에 관하여, 법적효력,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다만, 수신자가 상당한 주의에 의하여 전송에 에러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복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전자메시지의 법적 효력이 부인된다.(제5항, 6항) 즉 수신자(이용자)는 전송의 에러, 불법복제 등에 관하여 과실이 없는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인수받은 상품의 숨겨진 하자(흠)에 대하여 책임문제가 따른다. 일반 상거래의 경우는 직접 실물을 보고 선택하지만 전자상거래는 상품을 실물로서 직접 접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기대했던 대로의 품질이나 사용가치가 크게 떨어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법적 차원에서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자의 과실여부에 불문하고 책임을 지는 「제도물책임법」이 미국·일본 기타 유럽 각국과 같이 먼저 입법화해야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나. 통신사업자 등 시스템관리자의 책임문제

전자상거래에서 크게 3가지로 분야를 나눌 수 있다. ①상품의 판매등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컨데 백화점), ②정보를 처리·전송하는 통신망 시스템관리자, ③정보를 받아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그중에서 ②의 시스템관리자의 책임문제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현행의 각 입법례에서는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스템관리자의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가 진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역업무자동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전자문서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스템관리자인 「지정사업자」의 컴퓨터기록이 진실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시스템관리자에게 상품정보의 진실성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가 신뢰성이 없을 경우 시스템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장치는 불가능하다. 예컨대, 신문이나 잡지에 과대·허위광고를 게재했을 경우 신문사·잡지사는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신용추락 등 도의적인 책임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활성화를 기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시스템관리자에게 책임을 지는 방안이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예컨대, 시스템관리자가 소비자(이용자)와 정보제공자(사업자)와의 거래계약체결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명백하게 예측되는 경우에도 시스템의 제공을 방치하였거나 계속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일종의 방조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시스템 장해에 대한 책임문제를 들수 있다. 시스템 장해의 원인이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으로 명백히 규명될 경우는 당연히 책임을 진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6조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

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되 불가항력의 경우는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폭동 또는 화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소비자측의 손해는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한다. 최근에 홍수, 가스폭발, 화재 등이 종종발생하여 통신망이 파괴될 경우 그 손해는 이용자가 입게 된다. 또한 해커 등 불법침입자에 의한 손해도 피해자가 ID 번호 누출 등 피해자 과실로 떠넘기고 시스템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책임을 반반씩 분산하는 방법 또는 보험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전자자금거래법 제1693조에서 연방예금보험주식회사가 연방예금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 데이터베이스 등 시스템의 보안대책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앞에서 밝힌 바 있다.

모든 거래정보가 데이터베이스를 부터 출력되고, 처리·전송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대책이 전자상거래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무역자동화법 제18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지정사업자, 무역업자, 무역유관기관 및 대행처리업자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2항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의 훼손, 비밀침해의 금지, 제3항은 무역정보의 누설 및 도용방지 제4항과 제5항은 보관방법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과 5항에서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산업정보기록을 위조, 변조, 훼손 및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데이터베이스 입력정보의 보호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위의 각 법률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조치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이와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형량과 비교하여 매우 무거운 형벌을 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자거래에서 데이터베이스 침해자를 중벌하는 까닭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이 곧 전자거래의 정착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앞에서 제시한 사항들은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베이스등 시스템보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전자상거래법 제정에 있어서 그밖에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①거래와 관련된 신청 및 승락의 의사표시, ②거래계약의 성립시기, ③계약의 완료시점, ④의사표시의 하자, ⑤무권한 거래의 책임 등 민법, 상법, 방문판매관련법, 소비자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련 법률과 모순·저촉되지 않도록 서로 정비·조정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성공적으로 발전·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최근에 미국, EU연합을 비롯하여 국제기구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법적보호를 종래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방법과 달리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보호방안을 채택하고자 움직이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산업은 정보화 촉진의 기반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계 주요 국가에서 법적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베이스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입법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DC